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22호 2019. 11. 11.(월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37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377호	하동군 최첨관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하동군 조례 제2378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하동군 조례 제2379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하동군 조례 제2380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하동군 조례 제2381호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9-18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 고시(진교지구)	41
○ 하동군 고시 제2019-190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48
○ 하동군 고시 제2019-191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49
○ 하동군 고시 제2019-192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S*텔레*)	50
○ 하동군 고시 제2019-193호	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 고시(최은*)	51
○ 하동군 고시 제2019-194호	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 고시(농업회사법인*진주식회사)	52
○ 하동군 고시 제2019-19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대영하이츠)	53
○ 하동군 고시 제2019-196호	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 고시(더*드101)	54
○ 하동군 고시 제2019-19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56
○ 하동군 고시 제2019-198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하동군수(산림녹지과))	60
○ 하동군 고시 제2019-200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공고	62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9-1144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5
- 하동군 공고 제2019-1145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4
- 하동군 공고 제2019-1103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9
- 하동군 공고 제2019-1103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90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9-1115호 민방위 1차 보충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차)..... 100
- 하동군 공고 제2019-1116호 2019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102
- 하동군 공고 제2019-1117호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110
- 하동군 공고 제2019-1126호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17
- 하동군 공고 제2019-1141호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28
- 하동군 공고 제2019-1146호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고 132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76 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 2호 각 목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월 500,000원

별표 4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lt;신설&gt;</p>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각목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수의직렬 공무원 등</u> : 월 500,000원</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77 호

###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참판댁”이란 최참판댁, 박경리문학관, 드라마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과 전시물품, 담장, 조경수목, 한옥체험관, 한옥문화관, 문학 &생명관 등을 말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별표 1과 별표 2를 별표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 ※ 개별권 : 최참판댁을 입장하는 경우
- ※ 통합권 : 최참판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 입장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주중	주말	비고
숙 박	숙박 체험동	김훈장댁	40,000	60,000	실당 사용료
		김평산네	40,000	60,000	
	한옥 체험관	섬진재	50,000	100,000	
		지리재	60,000	120,000	
	한옥문화관	A동(8명)	200,000	300,000	동당 사용료
		B동(6명)	150,000	200,000	
C, D동(2명)		80,000	120,000		
행사장		공공요금 실비	-	-	
촬영장		공공요금 실비	-	-	

- ※ 사용기준 : 1실 4명기준, 기준초과시 1명당 10,000원
- ※ 주중 : 일~목요일,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최참관택"이란 최참관택, 평사리문학관, 드라마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과 전시물품, 담장, 조경수목·전통한옥 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등을 말한다.</p> <p>2. ~ 9. (생략)</p> <p>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8.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9.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최참관택”이란 최참관택, 박경리문학관, 드라마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과 전시물품, 담장, 조경수목, 한옥체험관, 한옥문화관, 문학&amp;생명관 등을 말한다.</p> <p>2. ~ 9. (현행과 같음)</p> <p>제9조(입장료의 면제) --- 각 호---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p> <p>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p> <p>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p> <p>1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p> <p>13. (현행 제9호와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78 호

###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1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 ~ 3. (생 략)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1급 ~ 3급)를 소지한 사람                      5. ~ 7. (생 략)                      &lt;신 설&gt;                      &lt;신 설&gt;                      &lt;신 설&gt;                      &lt;신 설&gt;                      8. (생 략)                      ② (생 략)</p>	<p>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 7. (현행과 같음)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79 호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군수는 가로등·신호등·전신주나 가로수, 도로변,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 또는 수거한 자에게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부군수가”를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12조의2,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① 군수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④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 위탁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수탁자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3(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지도·점검 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4(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2,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2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 이하	10,000원	
-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3,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2,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1)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0,000원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3)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2,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4,5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3,000원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파. 벽보(1건)	2,500원
하. 입간판	2,000원
거. 전단(1건)	2,5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1) 벽면에 설치하는 것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 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p>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li> <li>- 0.6㎡ 이상 0.8㎡ 이하</li> <li>- 0.9㎡ 이상 1.0㎡ 미만</li> </ul>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이상 1.3㎡ 이하</li> <li>- 1.4㎡ 이상 1.6㎡ 이하</li> <li>- 1.7㎡ 이상 2.0㎡ 미만</li> </ul>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이상 2.3㎡ 이하</li> <li>- 2.4㎡ 이상 2.6㎡ 이하</li> <li>- 2.7㎡ 이상 3.0㎡ 미만</li> </ul> <p>라) 연면적 3㎡ 이상</p> <p>2) 도로 외의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li> <li>- 0.6㎡ 이상 0.8㎡ 이하</li> <li>- 0.9㎡ 이상 1.0㎡ 미만</li> </ul>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이상 1.3㎡ 이하</li> <li>- 1.4㎡ 이상 1.6㎡ 이하</li> <li>- 1.7㎡ 이상 2.0㎡ 미만</li> </ul>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이상 2.3㎡ 이하</li> <li>- 2.4㎡ 이상 2.6㎡ 이하</li> </ul>	<p>법 제20조제1항 제호 및 제호의2</p>	<p>14만원</p> <p>24만원</p> <p>34만원</p> <p>44만원</p> <p>54만원</p> <p>64만원</p> <p>85만원</p> <p>107만원</p> <p>129만원</p> <p>130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10만원</p> <p>12만원</p> <p>14만원</p> <p>25만원</p> <p>37만원</p> <p>49만원</p> <p>59만원</p> <p>69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 이상 3.0㎡ 미만</li> </ul> <p>라) 연면적 3㎡ 이상</p>		<p>79만원</p> <p>80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나. 현수막</p>			
<p>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p>			
<p>가) 면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이하</li> </ul>		<p>장당 1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이상 2.0㎡ 이하</li> </ul>		<p>장당 12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 이상 3.0㎡ 미만</li> </ul>		<p>장당 14만원</p>	
<p>나) 면적 3㎡ 이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 이상 3.7㎡ 이하</li> </ul>		<p>장당 22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8㎡ 이상 4.4㎡ 이하</li> </ul>		<p>장당 28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 이상 5.0㎡ 미만</li> </ul>		<p>장당 34만원</p>	
<p>다) 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이상 6.0㎡ 이하</li> </ul>		<p>장당 47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 이상 8.0㎡ 이하</li> </ul>		<p>장당 63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 이상 10.0㎡ 미만</li> </ul>		<p>장당 79만원</p>	
<p>라) 면적 10㎡ 이상</p>			
<p>다. 벽보</p>			
<p>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ul>		<p>장당 17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ul>		<p>장당 22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장 이상</li> </ul>		<p>장당 33천원</p>	
<p>2) 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ul>		<p>장당 25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ul>		<p>장당 33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장 이상</li> </ul>		<p>장당 50천원</p>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ul>		<p>장당 8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ul>		<p>장당 13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장 이상</li> </ul>		<p>장당 17천원</p>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 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

---

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7]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의2 관련)

1. 보상금 지급기준

종류	구분	기준(면, 장, 매)	지급액(원)	비고
	규격(면적)			
현수막	대형(4㎡ 이상)	1	3,000	현수막 지지용 '끈' 포함
	소형(4㎡ 미만)	1	2,000	
벽보	-	1	60	
전단	10cm×6cm 이상	1	30	

주)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명 1일 20,000원으로 하고, 1명 1개월 200,000원으로 한다.

2. 보상금 신청요건

- 1) 대상지역 : 하동군 전 지역
-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하동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시장의 정비계획에 따라 수거된 광고물에 한함)

수거보상대상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군 관내(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펜스, 교각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li> <li>·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건물벽면 포함)</li> <li>·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li> <li>·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li> <li>·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li> <li>·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li> <li>· 아파트 등 개인건물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li> <li>· 신문지 전단지</li> <li>· 옥외 살포되지 않은 홍보·명함식 전단지</li> <li>· 타 시·군 지역 배포 광고물</li> </ul>

주)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있음.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h2 style="margin: 0;">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h2>				
수 탁 자	법인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p>「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하 동 군 수</b></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②·③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p> <p><u>군수는 가로등·신호등·전신주나 가로수, 도로변,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 또는 수거한 자에게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u></p> <p>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 ----- <u>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u>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p> <p>1. <u>위원이 심의 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u></p> <p>2. <u>위원이 심의 대상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u></p> <p>3. <u>위원이 해당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u></p> <p>4. <u>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u></p>

<신 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① 군수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게시 시설의 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  
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지정계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  
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  
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④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  
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  
자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계  
시대 관리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 위  
탁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

<신 설>

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수탁자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1조의3(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4(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80 호

###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로, “같은 법 제19조의2”를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2”로,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시행규칙 제13조의4”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전주 · 가로등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 지중배전용기기함 · 무선전화기지국 ·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 교통량검지기 · 주차측정기 · 우체통 · 소화전 · 모래함 · 제설용구함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 공중전화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 송전탑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송유관 · 전기관 · 전기통신관 · 송열관 · 농업용수관 · 작업구(맨홀) · 전력구 · 통신구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 암거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 광고탑 · 광고판 ·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 돌출간판	기타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표시	1년	9,900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면적 1제곱미터		
	·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 면적	1일	50
		기타의 용도	1제곱미터		150
	· 아치	도로횡단	표시 면적	1년	41,400
기타		1제곱미터	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그 진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진입로 · 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 궤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 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 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u>별표 1</u>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 <u>별표</u>----- -----.</p>
<p>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u>국유재산법 시행령</u>」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2. (생략) ③·④ (생략)</p>	<p>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국유재산법 시행령</u>」 제30조제4항 ----- -----. 1.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점용료의 감면)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u>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u>」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u>같은 법 제19조의2</u>, <u>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u> 및 <u>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u>을 따른다.</p>	<p>제6조(점용료의 감면) ----- ----- ----- ----- 「<u>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u>」 제11조의2----- -- 「<u>농어촌 도로정비법</u>」 제19조의2----- ----- ----- <u>시행규칙 제13조의4</u>-----.</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81 호

##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 국내기업 투자 지원, 투자유치 성공 포상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5. (생략)</p>	<p>제3조(세출)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u>외국인투자 지원, 국내기업 투자 지원, 투자유치 성공 포상</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하동군 고시 제2019 - 189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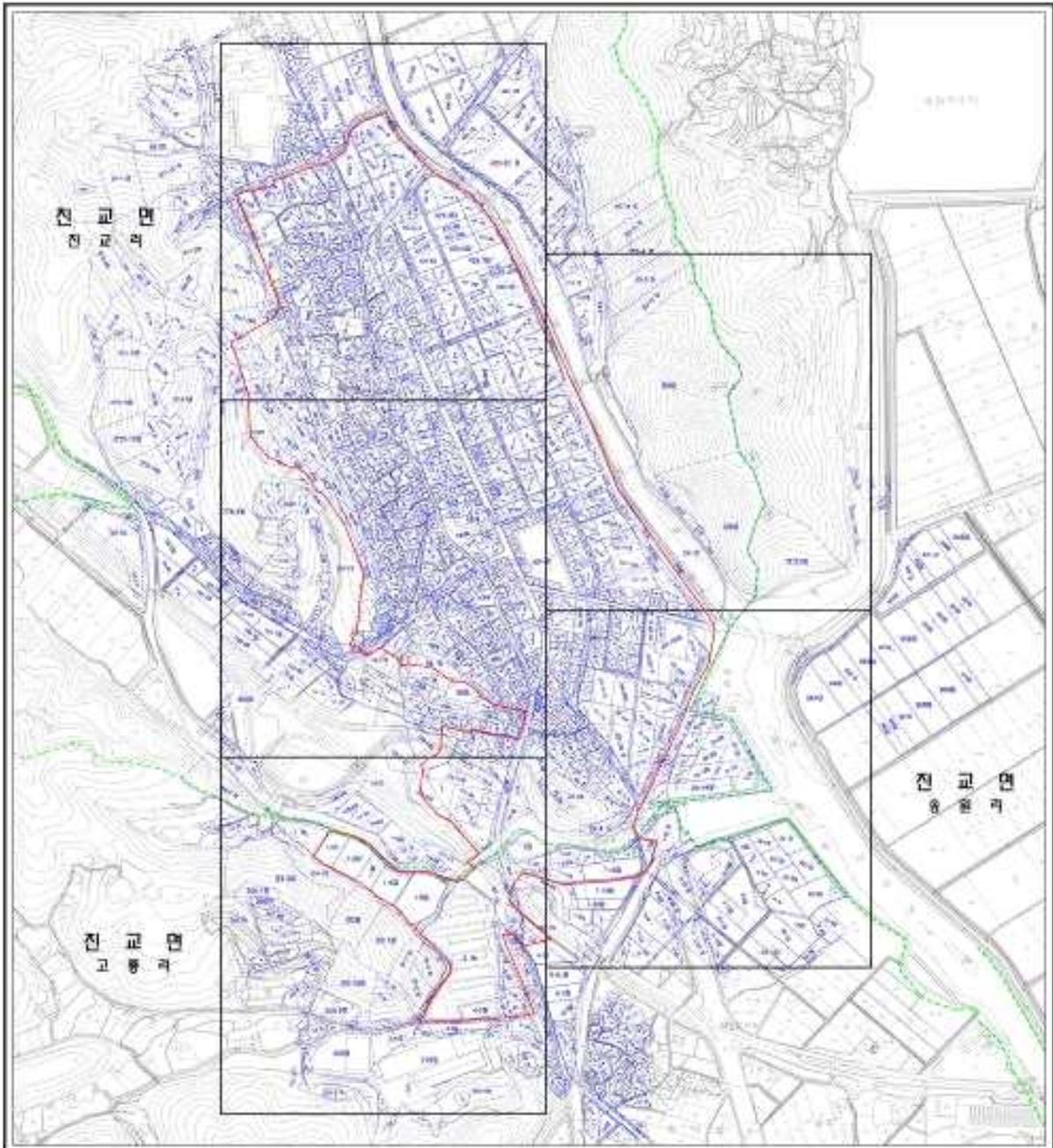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유 형	등 급	면적(m <sup>2</sup> )		
진교지구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86-2 ~ 진교면 고통리 4-4번지 일원	침수위험지구	가	562,725	집중호우시 저지대 시가지 및 농경지 상습적인 침수피해 발생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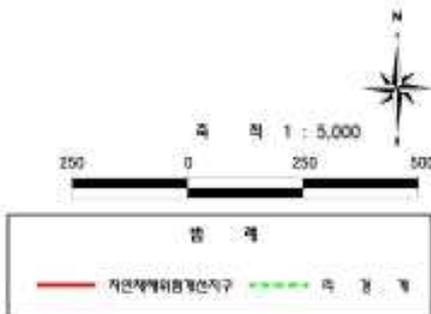
2019. 10. 18.

하 동 군 수

# 진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도면 종괄도



- ▣ 행정구역 : 하 동 군
- ▣ 지정권자 : 하 동 군 수
- ▣ 지정일치 : 미 정
- ▣ 고시일치 : 미 정
- ▣ 고시번호 : 제2019-000호(2019년 09월 00일)
- ▣ 작 성 자 : 적준이앤씨(주)
- ▣ 작성년월일 : 2019년 08월 00일
- ▣ 지적권소유 및 발행자 : 하 동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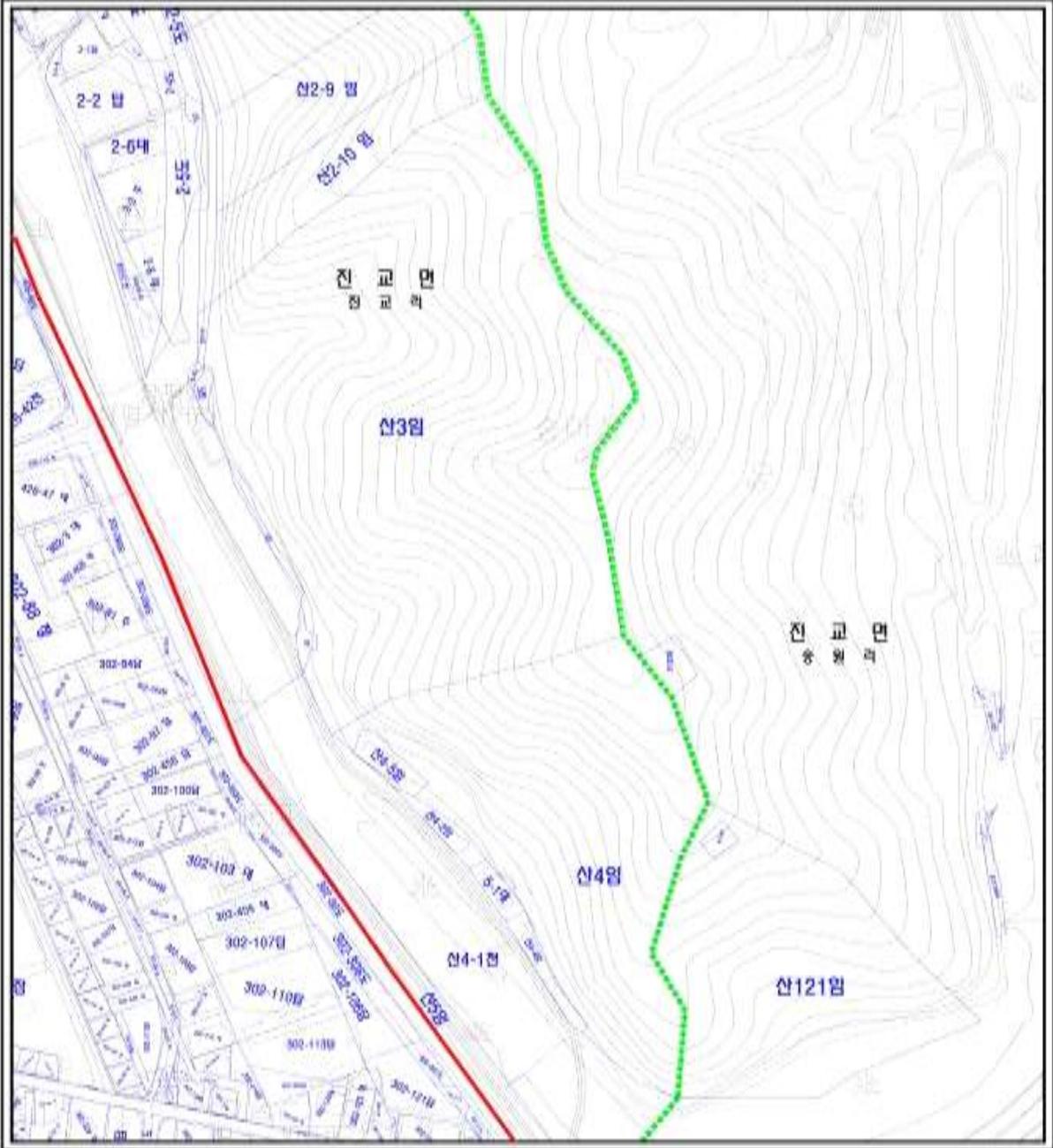


색 인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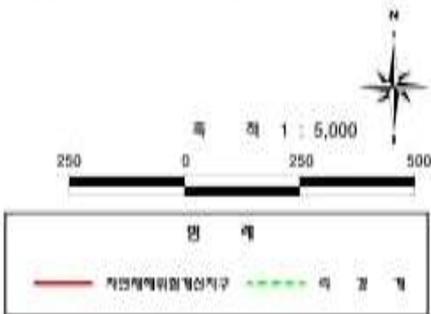
52271	
	52272
52273	
	52274
52275	



# 진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도면 종괄도(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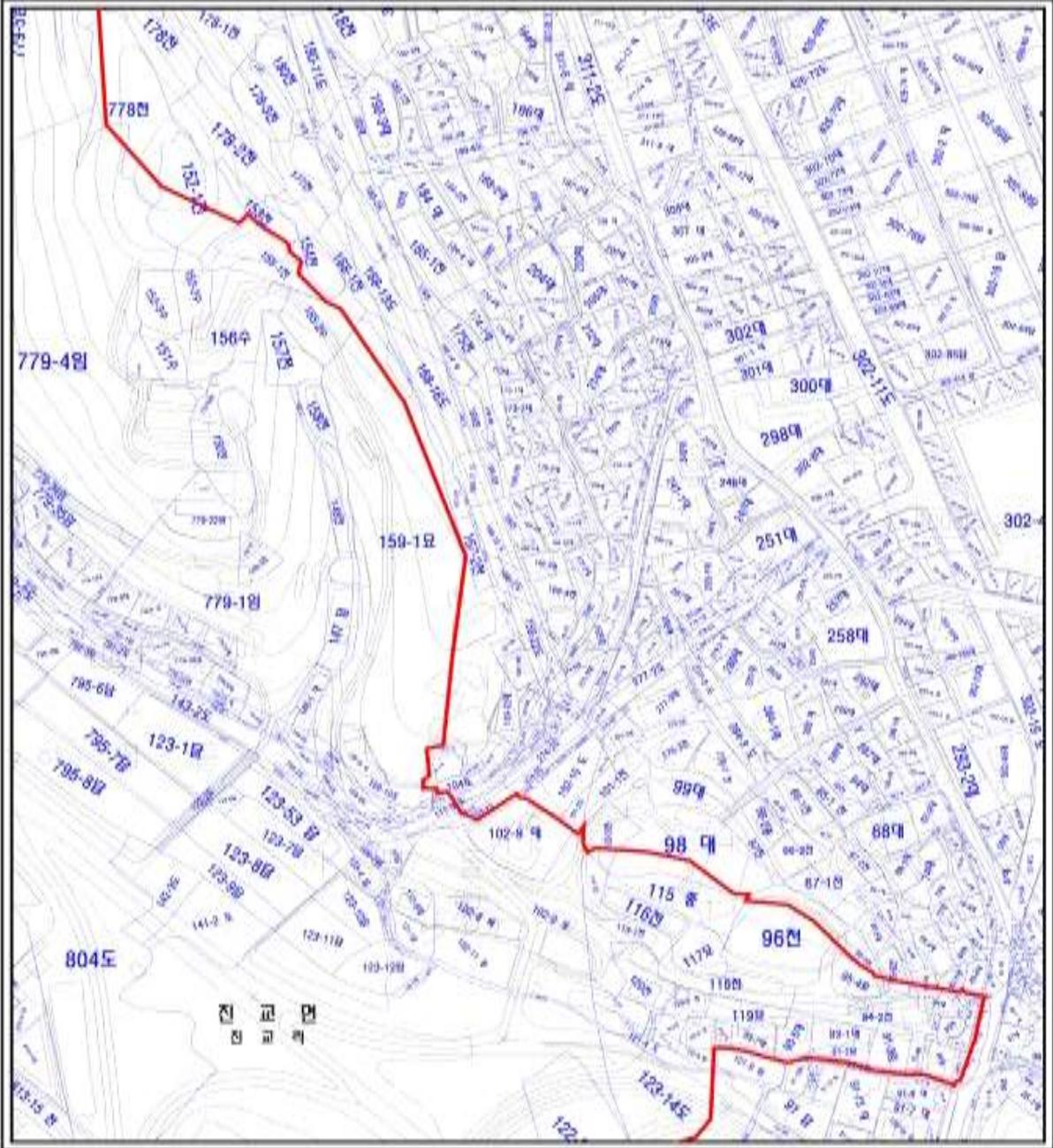
- ▣ 행정구역 : 하 동 군
- ▣ 지정권자 : 하 동 군 수
- ▣ 지정일차 : 미 정
- ▣ 고시일차 : 미 정
- ▣ 고시번호 : 제2019-000호(2019년 09월 00일)
- ▣ 작 성 자 : 허준아엔씨(주)
- ▣ 작성년월일 : 2019년 08월 00일
-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하 동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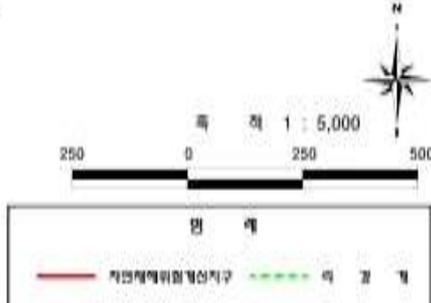
색 인 도

진교21	진교22
진교23	진교24
진교25	

# 진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도면 종괄도(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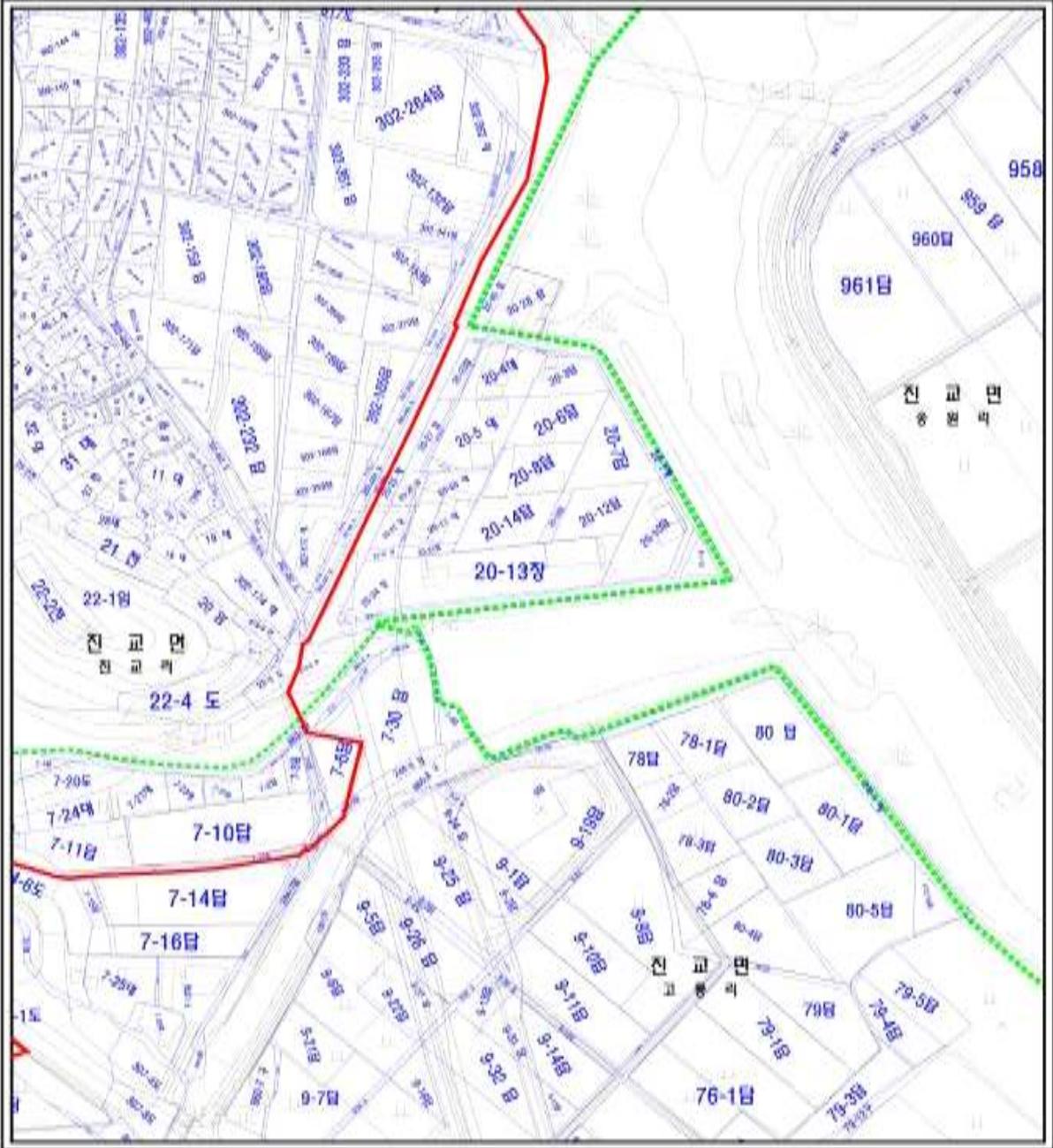
- ▣ 행정구역 : 하 동 군
- ▣ 지정권자 : 하 동 군 수
- ▣ 지정일차 : 미 정
- ▣ 고시일차 : 미 정
- ▣ 고시번호 : 제2019-000호(2019년 08월 00일)
- ▣ 작 성 자 : 하동아연씨(주)
- ▣ 작성년월일 : 2019년 08월 00일
- ▣ 지적권소유 및 발행자 : 하 동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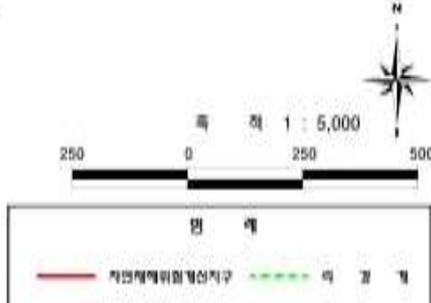
색 인 도

진교지21	
진교지22	
진교지23	
진교지24	
진교지25	

# 진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도면 종괄도(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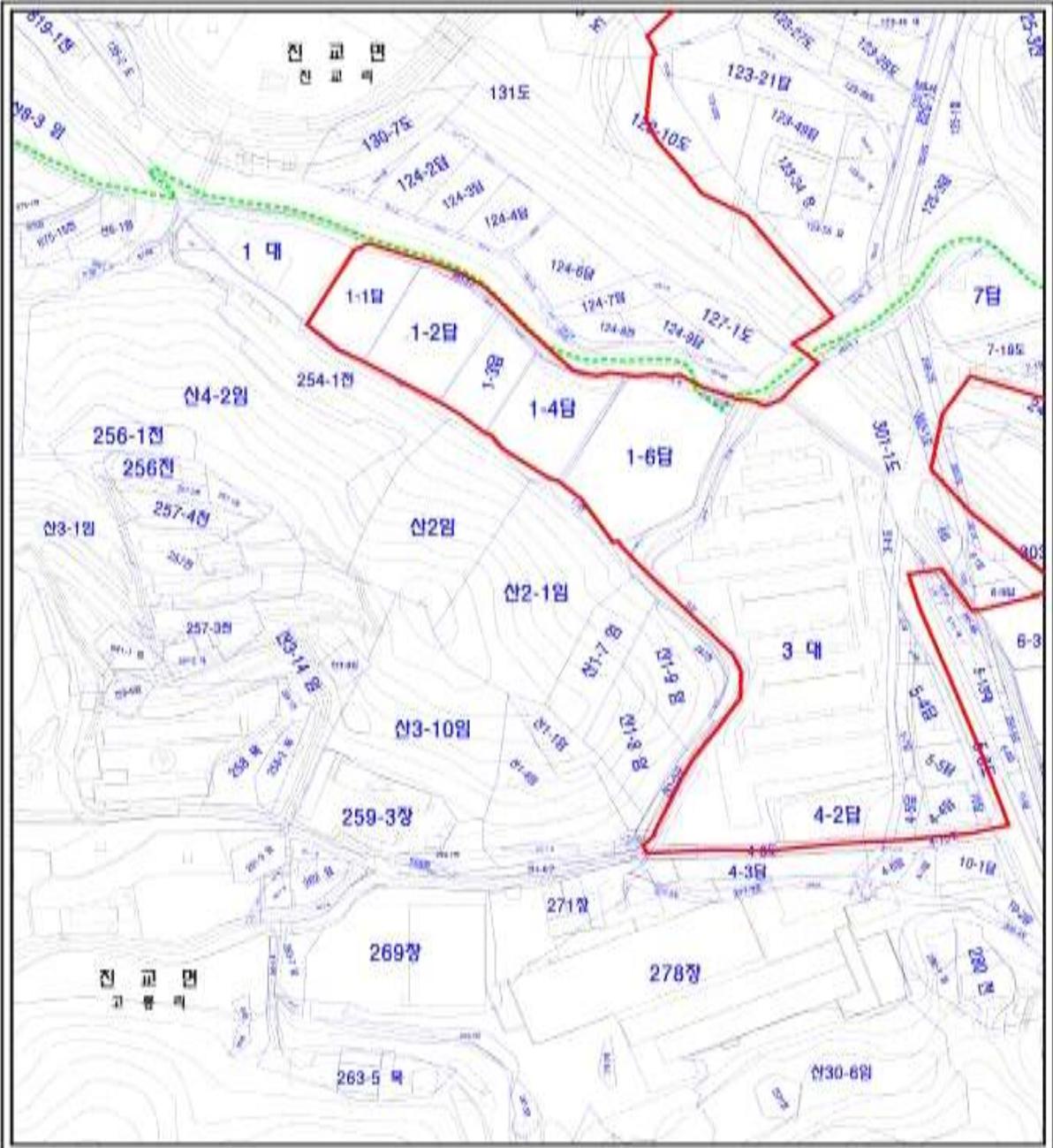
- ▣ 행정구역 : 하 동 군
- ▣ 지정권자 : 하 동 군 수
- ▣ 지정일차 : 미 정
- ▣ 고시일차 : 미 정
- ▣ 고시번호 : 제2019-000호(2019년 08월 00일)
- ▣ 작 성 자 : 하동아연씨(주)
- ▣ 작성년월일 : 2019년 08월 00일
- ▣ 지적권소유 및 발행자 : 하 동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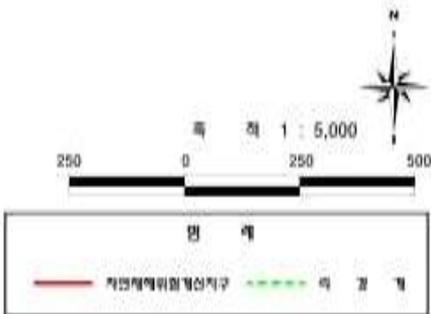
색 인 도

93921
93922
93923
93924
93925

# 진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도면 종괄도(5/5)



- ▣ 행정구역 : 하 동 군
- ▣ 지정권자 : 하 동 군 수
- ▣ 지정일자 : 미 정
- ▣ 고시일자 : 미 정
- ▣ 고시번호 : 제2019-000호(2019년 08월 00일)
- ▣ 작 성 자 : 하동아연씨(주)
- ▣ 작성년월일 : 2019년 08월 00일
-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하 동 군 수



색 인 도

진교지구	진교지구

하동군 고시 2019-190호

#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주 소	경남 하동군 악양면 대축길		
성명(법인명)	장형*		
하 천 명 칭	섬진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72-4, 72-3, 74-9, 75, 76, 77		
점 용 면 적	7,987㎡		
최 초 허 가 일	2019년 10월 22일		
점 용 기 간	2019. 10. 30. ~ 2019. 11. 05.(7일간)		

「하천법」 제3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19 - 191호

##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 저수지·댐을 지정 고시 합니다.

- 아 래 -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지정사유	비 고
		구역면적 (㎡)	총저수량 (㎥)	제당높이			
미량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232-1	65,000	2,940	3.0	하동군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2019년 10월 23일

하 동 군 수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하동군 고시 제2019-192호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58 SK텔레콤 부산지사		
성명(법인명)	에스케이텔레콤(주)		
생년월일			
하천명칭	곤양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958		
점용면적	4㎡		
최초허가일	2019년 10월 23일		
점용기간	2019년 9월 28일 ~ 2024년 9월 28일까지 (5년간)		

##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허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용지 유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9. 22.>

하동군 고시 제2019-19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span style="float: right;">최은*</span>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하동군 약양면 봉대길 3	

	변경 전 하동군 고시 제219-91호	변경 후
지번	고전면 신월리 1470(구) *인근: 고전면 신월리 959(답)	
면적	148 m <sup>2</sup>	199 m <sup>2</sup>
목적	수로관0.5×0.5 콘크리트 복개 (L=28m) 콘크리트 포장 T20cm(A=120m <sup>2</sup> ) 식생옹벽블럭쌓기 H0.7~3.3m (L=15m)	콘크리트 포장 T20cm(A=166m <sup>2</sup> ) 식생옹벽블럭쌓기 H1.8~2.9m (L=8m) 전석쌓기 H1.5m (L=3m) 전석쌓기 H1.0~2.6m (L=13m)
기간	2019. 6. 11. ~ 2024. 6. 11.	
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 하 동 군 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9. 22.>

하동군 고시 제2019-194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113번길 20	

	변경 전 하동군 고시 제2019-33호		변경 후	
	지번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864(구) (인접 고통리 608(답)) 69㎡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산46-6(구)(인접 고통리 608(답)) 8㎡		
면적	77㎡			
목적	진출입로 확보			
기간	2019. 3. 1. ~ 2023. 3. 1.		2019. 3. 1. ~ 2024. 3. 1.	
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 하 동 군 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195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633번지 일원 『대영하이츠』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9.

# 하 동 군 수

1. 고시목적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해관계인의 관계도서 확인
2. 사업개요 및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주체	대영산업개발(주) 대표 이범식 (경남-주택-2014-0023)	정토개발(주) 대표 광병규 (울산-주택-2015-001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북로 12, 2층(대내동)	울산광역시 북구 사창1길 37, 상가 106동 201호
사 업 지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633외 4필지	좌동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3,612.00㎡</li> <li>○ 건축면적 : 1,049.25㎡</li> <li>○ 연 면 적 : 10,359.38㎡</li> <li>○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li> <li>○ 동수/층수 : 1동/지상10층</li> <li>○ 세 대 수 : 101세대(분양)</li> <li>○ 주차대수 : 73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좌동</li> <li>○ 건축면적 : 좌동</li> <li>○ 연 면 적 : 좌동</li> <li>○ 주 용 도 : 좌동</li> <li>○ 동수/층수 : 좌동</li> <li>○ 세 대 수 : 101세대(임대)</li> <li>○ 주차대수 : 좌동</li> </ul>

끝.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196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357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973(천) \*인접: 화개면 삼신리 341-3(대)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91.0㎡

(또는

㎡)

목적

개거 (0.6 X 0.6) L=119.0

기간

2019. 10. 30. ~ 2024. 10. 30. (5년)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하 동 군 수 (인)

#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197호

#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30.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859 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1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64-1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670-97 외 1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0.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건물번호 부여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 명주소고시일	이 동사유	도로 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183-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859	2019 1030		2009 0702	동학전적지인 고성산 지남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7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200-26	2019 1030		2007 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492-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양보로 693	2019 1030		2007 0618	양보면 주요 간선도로로 면이름을 사용하여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1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356	2019 1030		2007 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12, 112-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354	2019 1030		2007 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175-2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97-21	2019 1030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 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38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고운동길 27	2019 1030		2009 0702	고운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89-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99-46	2019 1030		2009 0302	공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807-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532-10	2019 1030		2009 0302	공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71, 산5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모암길 30-5	2019 1030		2007 0618	모암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1128-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삼장길 133-20	2019 1030		2008 0402	연산조매 유명한 조지서가 생장안 곳인데 지족당이 9번 장원을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631-1, 631-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28-29	2019 1030		2007 0618	신대리 윗쪽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491-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심길 53-3	2019 1030	2007 0618	안심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127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이터길 135	2019 1030	2008 0402	임지왜란때 양씨와 이씨가 피란하였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 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127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이터길 133	2019 1030	2008 0402	임지왜란때 양씨와 이씨가 피란하였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 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274-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244-48	2019 1030	2007 0618	이명산의 달운재 밑 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306-1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유평길 32-54	2019 1030	2008 0402	유평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산24-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90-117	2019 1030	2007 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 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668-1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67-20	2019 1030	2008 0402	제면당이라는 지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60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80-4	2019 1030	2008 0402	옥산의 물이 맑게 흐 르므로 붙여진 자연 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176-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멧골길 11-36	2019 1030	2019 0627	예부터 불리던 멧골 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합병**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64-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66	2019 1030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 정리	2007 0618	우리지역의 중심지를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중앙도로명 표시원칙 적용 도로명 부여	S K 상 조
건물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6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66	2019 1030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 정리	2007 0618	우리지역의 중심지를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중앙도로명 표시원칙 적용 도로명 부여	S K 상 조

**건물번호 폐지**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670-97	20191030	건축물철거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호동길 5-16	20191030	건축물철거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3.23>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하동군 고시 제2019-198호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성명(법인명)	하동군수(산림녹지과)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614-83-00025		
하천명칭	악양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050-1 외 5필지		
점용면적	2,900㎡		
최초허가일	2019. 10. 31.		
점용기간	2019년 10월 31일 ~ 2024년 10월 31일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5 의거)		
허가조건	별도 붙임과 같음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하동군수**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 2019 -200호

## 하동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하동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07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하동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유산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모델 구축
- 세계적 농업유산의 보전·전승을 통한 하동 전통차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활력있는 농촌공간 조성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일원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4,900, 도비 630, 군비 1,470)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개년)
- 사업시행자 : 하동군, 하동신활력플러스추진단

#### 4. 주요 사업내용

○ 신활력 조직육성 및 지원

- 사 업 비 : 2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사업내용 : 신활력플러스 조직 육성, 추진단 운영

○ 하동 전통차 후계농 양성

- 사 업 비 : 357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사업내용 : 후계농 양성교육, 후계농 사업화 지원, 후계농 멘토링

○ 티(TEA,茶) 아카데미

- 사 업 비 : 249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사업내용 : 그린티 서포터즈, 티마스터 양성교육, 야생차 해설사 양성

○ 농업유산의 유지·보전

- 사 업 비 : 555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사업내용 : 하동차 품종 수집 및 보존, 차 품질관리 연구, 야생차밭 경관보전관리 협약, 다원품질관리지원

○ 전통차 산업의 고도화

- 사 업 비 : 28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사업내용 : 차 대중화 기반 조성, 차 음식개발, 차 뷰티제품 개발

○ 농업유산 콘텐츠 개발

- 사 업 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사업내용 : 하동차 전승보전 기록화, 스토리텔링콘텐츠 개발

○ 농업유산 관광인프라 구축

- 사 업 비 : 4,1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사업내용 :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조성,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활성화, 농업유산 탐방로 정비, 야생차 박물관 리모델링

○ 농업유산 체험관광 활성화

- 사 업 비 : 446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사업내용 : 다실/다숙 활성화 컨설팅, 농업유산 체험관광 통합플랫폼, ICT기반 야생차밭 체험 시스템, 야생차 투어 프로그램 개발, TEA 폴리마켓 운영

## 5. 기타 문의사항

- 하동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관계도서는 하동군청 특화산업과 (055-880-2833)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9-1144호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2. 제안 이유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실제 운영 현실과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3. 주요 내용
  -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 절차 변경(안 제5조 제1항)
  -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및 탑승일지 서식 변경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9년 11월 14일까지 하동군(건설교통과, 전화 880-2392, FAX 880-2509, e-mail: sss6673@korea.kr)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내”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내”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행복택시 운행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마을 대표자”를 “마을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행자”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대상마을”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마을의 대표자”를 “마을의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행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마을”을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로, “호의 어느 하나”를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운행(탑승)일지(제5조제3항 관련)

대상마을			
운행일시	년 월 일 :		
운행구간			
탑승자명단			
운행요금(원)	구간요금	탑승자 부담	차 액
<p>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차량번호 : 운 전 자 : (서명)</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u>군내 일반택시</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 ----- -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내</u> -----.</p>
<p>2. (생 략)</p> <p>제5조(비용의 신청) ① <u>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를 근거로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비용의 신청) ① <u>행복택시 운행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 략)</p> <p>제6조(비용지원 결정) ① (생 략)</p> <p>② 군수는 행복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u>마을 대표자</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비용지원 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마을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행자</u> -----.</p>
<p>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u>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u></p>	<p>제7조(사후관리) ----- <u>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u>----- -----</p>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  
-----  
----- 마을의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행자-----  
-----.

제8조(비용지원 중단) -----  
-----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호-----  
-----  
-----  
-----.

1. 2.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9-1145호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실제 운영 현실과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3. 주요 내용
  -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급 절차 변경(안 제8조 제3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9년 11월 14일까지 하동군(건설교통과, 전화 880-2392, FAX 880-2509, e-mail: sss6673@korea.kr)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신구조문대비표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조 중 “「하동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군수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이용방법) ①·② (생략)</p> <p>③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 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u>아니한다.</u></p>	<p>제4조(이용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않는다.</u></p>
<p>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u>하동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u>」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p>	<p>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 -- 「<u>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u>」 제3조----- ----- ----- ----- ----- ----- -----.</p>
<p>제8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② (생략)</p> <p>③ <u>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택시운행자에게 지급한다.</u></p>	<p>제8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군수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p>

하동군 공고 제2019 - 1149호

##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근거 마련 및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용어 수정
3. 주요내용
  - 관리위탁 근거마련 (안 제3조의 2)
  - 관리위탁의 해지 근거마련 (안 제3조의 3)
  - 용어수정 : 건축코디네이터 ⇒ 공공건축가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하동군(도시건축과, 전화 880-2138, pnc7942@korea.kr)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코디네이터”를 “공공건축가”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지침)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 ⑤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공동이용시설 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⑦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의 해지)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1.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2.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 4. 시설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 6. 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축코디네이터”를 “공공건축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건축코디네이터 운영)”을 “(공공건축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코디네이터”를 각각 “공공건축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건축코디네이터”를 “공공건축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협동조합 등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지침)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공동이용시설 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⑦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서

<신 설>

제4조(주민과 행정기관 등의 책무)

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의 해지)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 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시설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6. 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제4조(주민과 행정기관 등의 책무)

① 군-----  
-----  
-----  
-----  
-----





5. ~ 7. (생 략)

② ~ ④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 2019 - 1159호

##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 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하동군 공립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정비
3. 주요 내용
  -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구성에 따른 제명 및 정의 변경
  -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정책의 표준화를 위한 조정
  - 숙박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사용료 기준 마련
  -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기준 조정
  - 비현실적인 모노레일 이용료를 현실적인 가격으로 조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8 조제2항 제1호에 따름) 하동군(참조 : 산림녹지과, 전화 880-2489, FAX 880-2469, euna0511@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하동군 공립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하동군에 소재하는 공립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하동군 소재의 공립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 구재봉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
2.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79-9번지 일원

제3조제2호 중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휴양림”으로, “관리운영하는”을 각각 “관리·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

7호) 중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을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앞날)”을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앞날)”으로 한다.

6.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9. “지역주민”이란 하동군에 주민등록되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 중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를 “휴양림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방문”을 “방문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수기일 경우 단체숙박 및 세미나실을 관리주체와 미리 협의하여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시설물”을 “휴양림 시설물”로, “1개월”을 “6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후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 후 7일 이내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시설물을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개·보수하는”을 “개수·보수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한다”를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이용기간	요 금		비 고	
			정수기	비수기		
숙박시설	숲속의 집 (단독형)	6인용(43.05㎡)	1동/1일	110,000	80,000	
		4인용(30.18㎡)	1동/1일	100,000	70,000	
	트리하우스 (단독형)	2인실(24.11㎡)	1동/1일	80,000	60,000	
		3인실(27.05㎡)	1동/1일	100,000	70,000	
		4인실(35.03㎡)	1동/1일	110,000	80,000	
	숲속휴양관 (콘도형)	6인용(37~40㎡)	1실/1일	100,000	70,000	
8인용(45~47㎡)		110,000		80,000		
객실이용요금 감면 <small>(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small>	장애인	<b>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b>	객실요금의 30%할인			
	지역주민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다자녀가정 <small>(1가정 1실에 한함)</small>		객실요금의 2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4~7등급		객실요금의 2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객실요금의 2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세미나실	1실 405㎡	4시간 기준	300,000	200,000	1실	
		8시간 기준	400,000	300,000	1실	
세미나실의 감면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요금의 50% 할인			
구분	기준	요금		비고		
		개인	단체			
입장료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 (12~2월)에는 입장료 면제	
	청소년		600	500		
	어린이		300	200		
모노레일		인	3,000	3,000		
산림레포츠시설	어린이코스	인	10,000	8,000		
	성인코스		15,000	13,000		
	스포츠코스		15,000	13,000		
	스카이썰(코스당)		10,000	8,000		
목재문화체험장	대품(기계작업)	체험시간 (2시간기준)	3,000	2,400	체험 재료비 별도	
	중품(공구작업)		2,000	1,600		
	소품(단순작업)		1,000	800		
	목재체험장 시설사용		4시간	40,000		

1. 숙박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시간초과 시 1일 사용료를 추정 할 수 있다.
2.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 징수한다.
3. 세미나실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u> <u>관리·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u>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u>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u>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u>”으로 하고, 위치는 <u>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산276번지 일원</u>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관리운영자"란 <u>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u>을 직접 <u>관리운영</u> 하는 <u>하동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u>관리운영</u> 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하동군 공립 자연휴양림 관리·운영</u> <u>조례</u></p> <p>제1조(목적) ----- ----- <u>하동군에 소재하는 공립 자연휴양림</u>----- -----.</p> <p>제2조(명칭과 위치) <u>하동군 소재의 공립 자연휴양림</u>(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하동 구재봉 자연휴양림</u> : <u>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산 276번지 일원</u></li> <li>2. <u>하동 편백 자연휴양림</u> : <u>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 279-9번지 일원</u></li> </ol> <p>제3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u>휴양림</u> -- <u>관</u> <u>리</u> · <u>운</u> <u>영</u> <u>하</u> <u>는</u> ----- ----- - <u>관리·운영하는</u> -----</li> </ol>

3. ~ 5. (생략)

6.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7.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공휴일, 비수기의 주말 등(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앞날)을 말한다.

8. (생략)

제4조(적용범위)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

3. ~ 5. (현행과 같음)

6.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9. “지역주민”이란 하동군에 주민등록되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12.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앞날)-----.

13. (현행 제8호와 같음)

제4조(적용범위) 휴양림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  
문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하여야 한  
다. 다만 비수기에는 단체숙박 및  
세미나실에 대해서 전화 예약이 가  
능하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1개월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  
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약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  
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  
로 본다.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휴양림 시  
설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  
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  
-----  
-----.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  
-----  
- 방문하여 -----  
----- . 다만 비수기일 경우 단  
체숙박 및 세미나실을 관리주체와  
미리 협의하여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시설물-----  
----- 6주 -----  
-----.

③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  
는 자는 예약 후 다음날 23시 50  
분까지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 후 7일 이  
내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예  
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시  
설물을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  
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 4. (생 략)

제9조(시설사용 제한) ① 관리운영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생 략)
-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 우
- 3. · 4.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 는 휴양림 내에서 다음 사항을 위 반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 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 음)

② ----- 사람-----  
-----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사용 제한) ① -----  
-----  
-----  
-----.

- 1. (현행과 같음)
- 2. ----- 개수·보수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

- 1. ~ 6.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9 - 1115호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1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교육일시

- 1) 민방위 집합교육 : 2019. 10. 21. (월) 09:00~13:00
- 2) 민방위 비상소집 : 2019. 10. 21. (월) 19:00~20:00

### 나. 교육장소

- 1) 민방위 집합교육 :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다목적홀)
- 2) 민방위 비상소집 : 하동군청 대회의실

다. 교육내용 :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이론교육 및 실전체험훈련 등

라. 준비사항 : 신분증, 필기구 지참

마. 공고대상 : 불임참조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10. 17.

#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9-1116호

## 2019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2차)

경유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9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소유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7.

하 동 군 수

###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년 10월 17일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물량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 64백만원, 4대
- 지원대상
  - 하동군에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
  -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신청방법
  - 차량 소유자는 엔진교체 제작사에 엔진교체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장치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하동군으로 제출
  - 엔진교체 신청과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 지원조건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와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신청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하동군으로 참여신청서 제출
- 엔진교체 구조변경일로부터 **3년간 의무사용** 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회수기준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장치제작사가 하동군에 승인 신청할 때 신청자의 체납이 없어야 함
-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해야 함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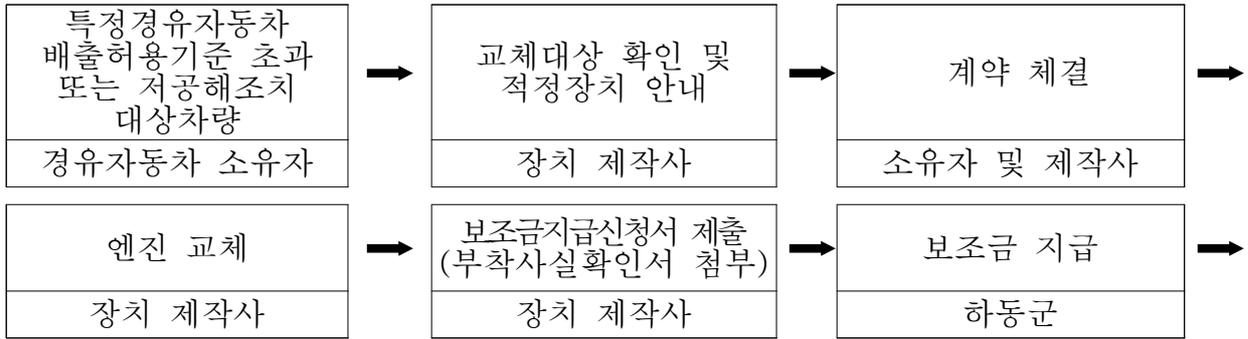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전기굴삭기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굴삭기		
	14톤	20톤	30톤
장치가격	34,632	38,163	41,269
보조금	13,853	15,265	16,508
자기부담금 (부담율)	20,779 (60%)	22,898 (60%)	24,761 (60%)

###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 기타문의

□ 문의 : 하동군 환경보호과 (☎055-880-2564)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 이알인터내셔널(주) (☎ 031-940-2560)
- (주)크린어스 (☎ 031-627-2900)
- (주)엑시언 (☎ 031-270-6381)
- (주) HK-Mns (☎070-4267-2729)

[붙임1] 신청서

<b>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참여 신청서</b>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건설기계	건설기계 명	굴삭기 (    ) 지게차 (    )	등록번호	
	형식(모델)		원동기형식 (엔진형식)	
	주행시간		최초등록일	
	작업 내용 (용도)	<small>옥내에서/옥외에서 물건 운반 기타 등등</small>	사 업 자	

2019년 하동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앞·뒷면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

하동군수 귀하

[붙임2]

건설기계 엔진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건설장비 현황

소유자		건설기계명		형식	
등록번호		연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주행시간	hr

□ 엔진교체 현황

엔진형식		규격		제품(일련)번호	
엔진교체사업자		장착장		교체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 엔진교체 후 폐차 또는 수출로 인한 등록말소할 경우 보조금 반납의무 있음  
- 교체일~3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탈거된 구형엔진 및 주변장치는 하동군에 반납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사업자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 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건설기계 엔진교체 확인서 사본

년 월 일

작성자(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엔진교체사업자)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붙임3] 보조금 지급 청구서

## 보 조 금 지 급 청 구 서

신 청 자 (적격업체)	사업자명										
	대 표 자										
	주 소		(연락처 : )								
지급신청 내 용	종 류	합 계	지게차			굴삭기					
			2톤	4톤	6톤	5톤	14톤				
	사 업 량(대)										
사 업 비(원)											
엔 교 결  진 체 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건 설 기 계 현 황						장 치 현 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건설 기계명	형식 (모델)	규격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주행 시간	장치 종류	
	계							hr			
								hr			
							hr				

2019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엔진교체사업자) :

(인)

###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건설기계 엔진 교체 확인서 1부
2.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붙임4]

위 임 장	
건설기계 의 표시	등록번호 :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종류 :
구조변경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하동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건설기계 소유자 : ①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①  주소 :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하동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건설기계 관리자 : ①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①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붙임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 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성명)

(서명, 날인)

하동군수 귀중

하동군 공고 제2019-1117호

##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경유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소유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7.

하 동 군 수

###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년 10월 17일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물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 29백만원, 10대(자동차)

#### ○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 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우선지원

#### ※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1833-7435) 안내

#### ○ 신청방법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1644-9050) 안내에 따라 장치 부착 등 절차를 이행

(차량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능이 발휘될 수 없는 차량 제외)  
 → 장치부착 신청과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 지원조건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와 부착가능 여부를 사전협의 후 계약 체결 및 저감장치 부착
- 수도권대기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득한 배출 가스저감장치 부착
- 장치를 부착한 후 폐차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음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최소 2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회수기준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 중형장치 부착대상에 대형장치를 부착한 경우와 대형장치 부착대상에 중형 장치를 부착한 경우 중형장치 보조금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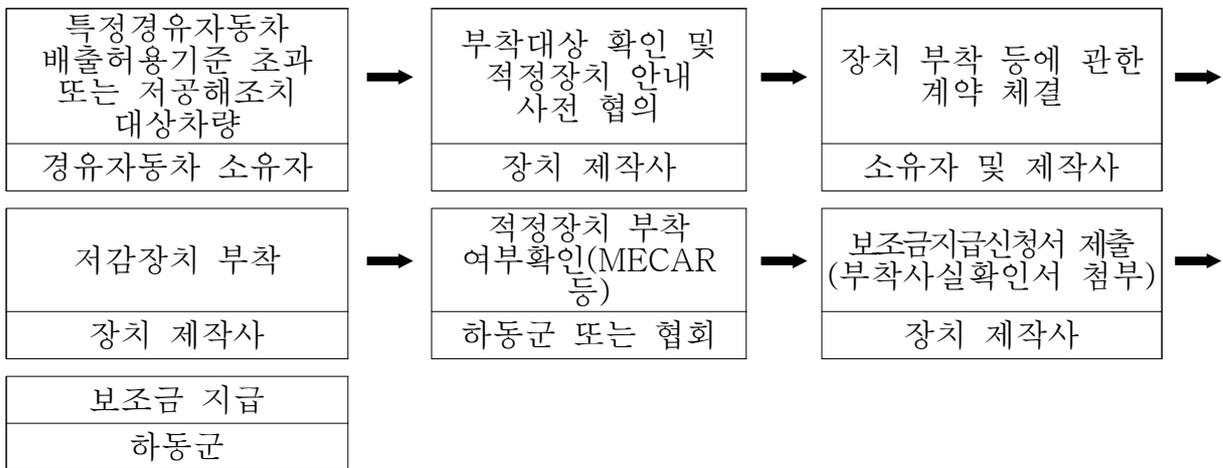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구 분				장 치 가 격				유지 관 리 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p-DP F	소 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 기타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644-9050) : 배출가스저감장치 기술상담 및 부착지원
- 하동군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부서(☎055-880-2564)

[붙임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cc		출 력	ps		주행거리	km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 / 1,000km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 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 ~ 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 ~ 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OOOO회사 대표자 귀하





[붙임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인천광역시 등),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성명)

(서명, 날인)

하동군수 귀중

하동군 공고 제2019 - 1126호

##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을 기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여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 기능에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등을 포함(안 제5조)
  - 주민자치회 위원 확대 및 위원선정 방법(안 제6조)
  - 간사 및 감사선정,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설치 등 사무처리 강화(안 제8조, 10조, 11조)
  - 연1회 이상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의 수립(안 제13조, 14조)
  - 위원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안 제7조, 16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63, FAX 880-2159, 35hero@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하동군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에 설치되고 해당 읍·면의 주민등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나가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주민자치회의 설치)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2.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 3.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 자치업무

제6조(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하여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연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3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 추천하여 순위를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등에서 2명 이상의 위원을 선정할 수 없다.

⑥ 주민자치회는 제3항의 위원과 제4항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날부터 10일 안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위원의 사임 또는 축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⑨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 그 위원 명단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⑩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 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20조제1항제 2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후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최소한 6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 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추첨 운영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치회장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해당 읍·면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치회장은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4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하동군 공고 제2019 - 1141호

##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행정 환경이 급변하면서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심화되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적극행정의 정의(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5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11월 14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880-2014, FAX 880-2019, evilblesse@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 인

사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1.영 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2.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9 - 1146호

##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9. 07. 01.

2. 결 정 · 공 시 일 : 2019. 10. 31.

3. 결 정 · 공 시 필 지 수 : 2,285필지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합 계	2,285필	횡천면	170필	북천면	325필
하동읍	374필	고전면	77필	청암면	76필
화개면	188필	금남면	113필	옥중면	184필
악양면	201필	진교면	240필	금성면	75필
적량면	168필	양보면	94필		

4. 결 정 · 공 시 내 용 : 토지지면별 m<sup>2</sup>당 가격  
(토지지면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

### 5.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9. 10. 31. ~ 12. 2.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서면)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우편 접수 가능  
(전자민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민원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 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055-880-2297, 2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10 월 31 일

하 동 군 수